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25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18. 10. 30 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18. 10. 15.
- 회부일 : 2018. 10. 19. (의안번호 :18 - 86)

2. 개정이유

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회계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2조의2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.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고, 근거법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